

예산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

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의회에서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4월 4일

예산군의회의회장 장 순 관



1. 조례안 목록

조 례 안	대표발의의원	비고
예산군 홍보매체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	강선구	
예산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	김영진	
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	강선구	

※ 조례안 : 따로 붙임 참조

2. 의견제출

-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. 4. 11.(금)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의회의회장(참조 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내용 :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의견과 그 이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

- 개 인 : 성명, 주소, 전화번호
- 기관·단체 :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, 주소, 전화번호

- 제 출 처 : 예산군의회 의회사무과

- 주 소 : (32435)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

- 전 화 : 041-339-7092 (FAX :041-339-7099)

- 제출방법 : 우편(4월 11일까지 도착분), FAX, 직접방문,

인터넷(예산군의회 홈페이지 <http://www.councilyesan.go.kr>)

※ 붙임 :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

[붙임]

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자치법규명 :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조례(안) 내용	의견	비고